

의 안 포 함	제2736호~제2739호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2026. 5. 7.(목) 10:00
제37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○ 안건 : 4건(일부개정안 4건)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목 차

-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
-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
-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
-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

1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36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7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차상현 의원 외1명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무기명투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개회식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개원 임시회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같음함
- 의장·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- 후보자가 1명인 경우의 선거 실시 조항 신설
 - 후보 등록 및 사퇴서 제출 기한 명시

4. 관련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, 제74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장성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규정한 무기명투표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,

- 후보자가 1명인 경우의 선거 절차를 명확히 하고 후보 등록 및 사퇴 기한을 규정하는 등 선거 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.
- 또한 개원 임시회 개최식을 개원식으로 같음하도록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.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37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7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차상현 의원 외1명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위원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집행부 조직 명칭에 따라 변경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의 범위와 특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-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를 의장 선거에 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(안 제2조)
 - (현행) 4명 ⇒ (개정) 5명
-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(안 제2조, 제3조)
 - (현행) 행정자치위원회 ⇒ (개정) 관광복지위원회
 - (현행) 산업건설위원회 ⇒ (개정) 건설농정위원회
-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 - 상임위원장 후보등록 기한 명시 :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
 - 단독 후보인 경우의 투표 미 실시 조항 삭제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, 제71조, 제74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집행부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통해 소관 업무의 범위와 특성을 명확히 하고,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를 정비하여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.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38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7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차상현 의원 외1명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개정이유

- 현재 사용중인 의원 신분증의 서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실제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철인 날인 규정 삭제(제6조)
 - “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” 조항 삭제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의원 신분증 서식 중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실제 운영 실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신분증에 철인을 날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내용임.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39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7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회의장(차상현 의원 외1명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개정이유

- 의회기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기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회기의 규정 조항 삭제 및 변경(제2조)
 - 의회기 표준 규격 및 표지 색채 조항 삭제(제2조제1호, 4호, 6호)
 - 의회기 호수별 표준규격 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」 제7조 준용 신설
- 의원 배지 규정 삭제 및 변경(제6조제2항)
 - “의회의원 배지는 뒷면의 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선거구 순으로한다” 조항 삭제
 - 실제 제작·배부 중인 의원 배지의 형식과 규정이 일치하도록 별표 2의 의원 배지 양식 정비(변경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의회기 규격 및 의원 배지 관련 규정을 현실에

맞게 정비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- 의회기 표준 규격을 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」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비하고, 불필요한 세부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임.
- 또한 의원 배지의 제작·배부 실태와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됨.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의 안	제2740호~제2748호,
번호	제2755호

2026. 5. 7.(목) 10:30
제377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: 10건
(제정안2, 개정안6, 계획안1, 동의안1)



행정자치위원회

목 차

- 장성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... 3
-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
-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
-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
-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
-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
- 장성군 영양관리 조례안 16
-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
-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
- 전라남도 장성군, 광주광역시 북구,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변경 동의안 22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40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7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회의장(나철원 의원 외1명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지원 대상 및 범위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사업 추진 및 사무의 위탁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재정 지원 및 중복지원의 제한(안 제9조 ~ 안 제10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(안 제11조 ~ 안 제13조)

4. 관련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
- 특히, 경계선지능아동은 법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복지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으로,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
- 상위법인 「아동복지법」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서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른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41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(2026. 7. 1.)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역·직위 명칭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 등 단순 변경

종 전 명 칭	변 경 명 칭	종 전 명 칭	변 경 명 칭
전라남도	전남광주통합특별시	전라남도지사	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
광주광역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	광주광역시장	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

- 세부 변경 내용 : 34건

소관부서	제 명	개정대상
기 획 실	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	제3조 제3호, 제21조
	장성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	제28조
	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	제2조 제1호 ~ 8호
인 구 경 제 실	장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	제2조 제2호 가목
	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	제19조
	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	제24조 제8호
	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	제5조 제3항

총 무 과	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	별표
	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	제2조 제2호
	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2조, 제5조
민원봉사과	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	제4조 제2호
	장성군 건축 조례	제10조 제5항 제2호 등
관 광 과	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2조 제1호 등
문화교육과	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	제6조 제3항 제2호 등
	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	제7조
주민복지과	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2조
	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2조, 제5조
가족행복과	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2조 제2항
환 경 과	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	제5조 제3항
세무회계과	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	제10조 제3항 등
재난안전과	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	제3조 제2항
	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제6조 제7호 등
	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	제5조
	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제3조 제2항 제5호 등
	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	제22조 제1항
	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4조 제1항 제3호 등
지역개발과	장성군 도시계획 조례	제3조, 제29조
교통에너지과	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13조 제3항
보 건 소	장성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	제2조 제2호 나목 등
	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	제14조 제1항 등
체육사업소	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	제5조 제1호 등
	장성군 체육진흥 조례	제16조 제4호
	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	제5조 제호, 제7조 제호
황룡강사업소	장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	제2조 제3호

□ 관련법령

-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(법률 제21446호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 및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, 법령 시행에 따른 필수적 후속 조치임.
-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명칭, 직위 명칭 등 단순 용어 정비로서 실질적인 권리·의무의 변동은 없으며, 조례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비에 해당함.
- 다만, 제3조(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) 및 제14조(장성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)부터 제15조(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)의 경우, 조문에서 “전남광주통합 특별시” 체계가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행정구역 체계의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제24조(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)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협의회 구성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, 본 일괄개정 취지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- 그 밖의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, 법적·행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42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화장으로의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대상을 “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” 로 일원화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기준 정비

3. 주요내용

- 장성군 추모공원 안치 조건 삭제(안 제3조제1호)
 - (현행)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고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연고자
 - (개정) 사망일 기준 장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- 중복 지원방지를 위한 지원 제외대상자 조문 개정(안 제3조의2제3호)
 - (현행)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
 - (개정)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
- 대상자별 지원금액 정비(안 제4조)
 - 장성군 추모공원 안치 조건 삭제에 따른 지원대상별 금액 정비(대상별 차등지원, 5~30만원)
- 별지 서식 수정 : 자격확인, 구비서류,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비

4. 관련법령

- 「장사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변화에 맞춰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됨
- 특히, 장성군 추모공원 안치 조건을 삭제하고 일정 기간 주민 등록 요건으로 지원 대상을 일원화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타당함
- 또한,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금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43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세무회계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 감면 규정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위임 필수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상위법 변경(안 제7조)
 - (현행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 2 및 같은 법 제121조의 5
 - (개정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8조의 3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 2에서 위임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 개정(안 제9조)
 -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
 - (개정)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
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 경감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, 제75조의2, 제78조의3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,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
- 특히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의 법령 이관 및 감면 적용기간 변경 등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및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며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55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30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세무회계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취득·처분 계획 : 취득 1건(건물 1)

(단위 : m², 천원)

유형	사업명	소재지	면적	재산가액	비고
계	1개 사업		2,697.98	14,000,000	
건물	첨단3지구 다목적 체육관 기부채납	진원면 산동리 544-30 일원 (근린공원 1)	2,697.98	14,000,000	

- 공유재산 관리계획

(단위 : m², 천원)

구분	필지수 / 동수	면적	재산가액	비고	
계	1필지 / 1동	2,697.98	14,000,000		
취득	건물 (기부채납)	1동	2,697.98	14,000,000	지상2층

4. 관련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조, 제10조의2,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5조, 제12조 및 제15조

5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법정 절차로서,
- 첨단3지구 내 다목적 체육관 기부채납에 따른 건물 취득 계획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44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보건정책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대상포진 발병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은 60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하여 질병 부담을 낮추고 건강증진 도모

3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확대(안 제3조제1항)
 - (현행) 대상포진 : 접종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(단, 접종횟수는 1회로 한다.)
 - (변경) 대상포진 : 접종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(단, 접종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)

4. 관련법령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(임시예방접종)
-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(질병관리청고시 제2026-1호) 제2조제2항(적용대상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질병 예방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함
-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 특성을 고려할 때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45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건강증진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지역특성에 맞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체계적인 영양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,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행정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(안 제3조)
-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영양·식생활 조사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사업 참여자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(안 제7조)
- 업무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(안 제8조 ~ 제9조)

4. 관련법령

-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3조
- 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영양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「국민영양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으며, 제도 도입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46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건강증진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,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에 맞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기준 정비하고 위촉위원의 자격요건과 성별 균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협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“부군수” 에서 “보건소장” 으로 변경하여 보건업무 총괄부서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(안 제3조 제2항)
- 부위원장을 “위원 중 호선” 에서 “업무 담당부서의 장” 으로 지정, 명확성 제고 및 조례 문장 적정하게 현행화(안 제3조 제3항)
- 위촉위원 자격요건 구체화, 성별 균형 기준 명시(안 제3조 제4항)
- 조직개편 등 고려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조항 수정(안 제3조 제5항)

4. 관련법령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직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
-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정 방식 명확화, 위촉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및 성별 균형 기준 명시 등은 협의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47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체육사업소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체육인 육성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17조(운영 지원) 제1항 (별표2) 선수단 훈련비 지급 기준 재정비
 - 운동선수 특성상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해 식비, 간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 지급

4. 관련법령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
-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17조(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함

- 운동선수의 특성을 고려한 식비 및 간식비 상향 조정은 선수 복지 증진과 경기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.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48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총무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간 행정구역 경계가 부정형으로 형성되어 토지이용의 비효율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추진함.
- 지난 2022년(제342회 임시회)에서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으나,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편입면적 불일치 및 지적불부합지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재조정한 변경안에 대해 장성군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경계조정 대상지역
 -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된 전라남도 장성군, 광주광역시 북구, 광산구 일원
- 경계조정 : 첨단3지구 도로, 공원, 녹지 등의 선형으로 경계조정

○ 세부 면적내역 * 자치단체간 면적 동일/ 필지조정(세부내역 불임)

<당초 안>

장성군에서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는 면적	
107필지, 166,747㎡	
광주광역시 북구	90필지, 146,387㎡
광주광역시 광산구	17필지, 20,360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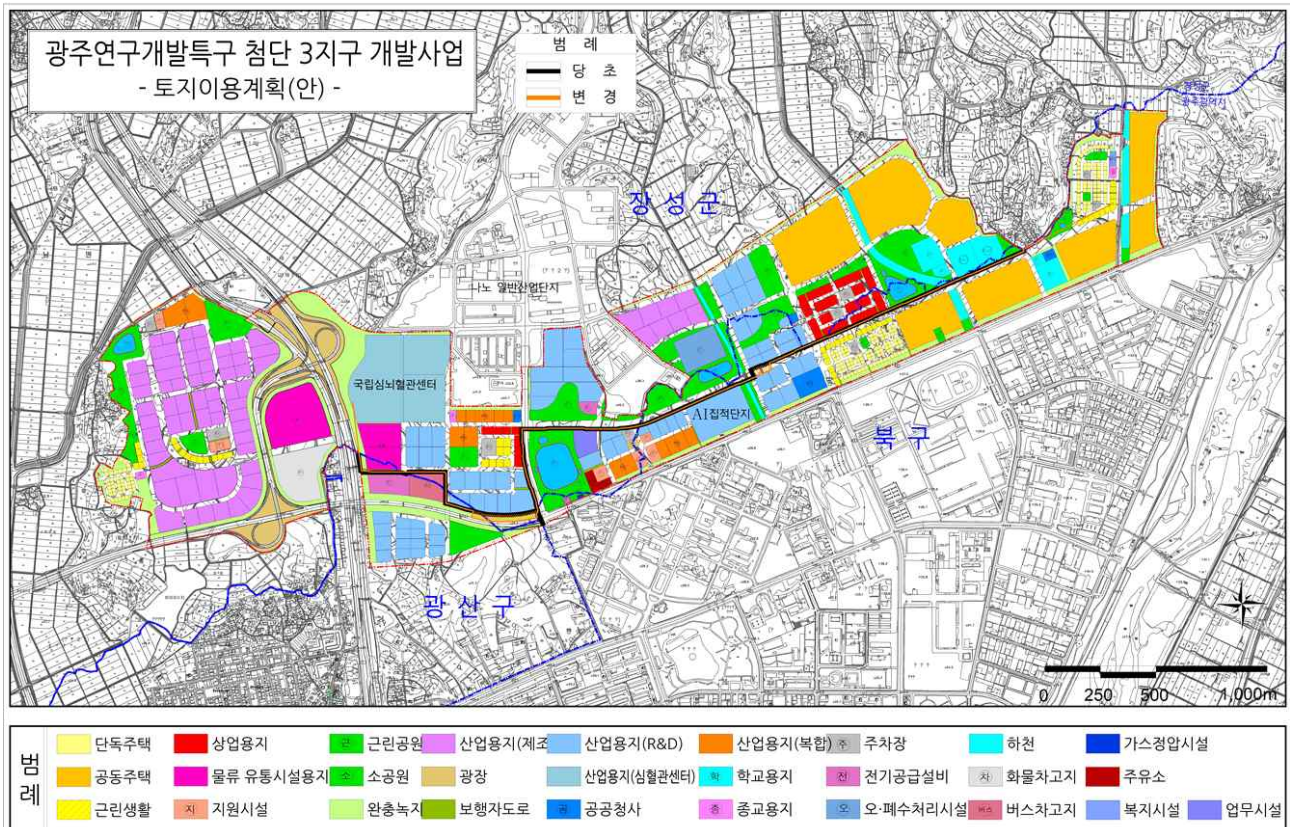
광주광역시에서 장성군으로 편입받는 면적	
207필지, 166,747㎡	
광주광역시 북구	185필지, 147,001㎡
광주광역시 광산구	22필지, 19,746㎡

<변경 안>

장성군에서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는 지역(증감)	
103필지(△4), 159,153㎡(△7,594)	
광주광역시 북구	84필지(△6) 146,431㎡(44㎡)
광주광역시 광산구	19필지(2) 12,722㎡(△7,638㎡)

광주광역시에서 장성군으로 편입받는 지역(증감)	
242필지(35), 159,153㎡(7,594)	
광주광역시 북구	212필지(27) 146,431㎡(△570㎡)
광주광역시 광산구	30필지(8) 12,722㎡(△7,024㎡)

○ 행정구역 경계조정 위치도



4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, 제2항(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)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)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북구·광산구 간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토지이용의 비효율과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함
- 기존 의회 동의 이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자체 간 면적 불일치 및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보완하여 경계변경을 재조정된 변경안에 대해 장성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첨부서류 : 생략

의안 번호	제2750호~제2754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

2026. 5. 7.(목) 14:00
제377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

검 토 보 고 서

안건 : 5건

(제정조례안 2, 개정조례안 1, 동의안 1, 의견청취의 건 1)



산업건설위원회

목 차

1.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
2. 2030 장성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
의견청취의 건 4
3. 장성군 신·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
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6
4. 장성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8
5.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
관리대행 동의안 10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50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지역개발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 또는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와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빈집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상위법인 「농어촌정비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명 개정
 - (현행) 「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」
 - (개정) 「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
- 빈집 “활용”에 대한 정의 명확화(안 제2조제3호)
- 조례명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3조, 안 제4조)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의2에 따른 실태조사 의무화(안 제5조제3항)
- 빈집정비 지원 조건 확대 신설(안 제7조제1항제3호, 제4호)
 - 공공목적의 활용을 위한 빈집 조건 확대
- 빈집의 활용 용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
4. 관련법령
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의2(빈집 실태조사), 제65조의6(빈집의 매입 및 활용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·매입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,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“활용” 근거를 마련하고, 상위법인 「농어촌정비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(빈집 실태조사, 매입 및 활용)을 규정·정비하고자,
- 조례명을 「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」에서 「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“활용”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,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, 빈집정비 지원 조건을 확대하고, 정비 완료 빈집의 임대주택·공동이용시설·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사무소 등 활용 용도를 신설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개정의 필요성·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51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지역개발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2040년 장성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성군의 장기발전방향의 구체화,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변경지역의 재정비 및 주민요구 수용을 위한 현실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,
-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, 합리적인 용도지역의 현실화, 주민 불편해소, 그리고 종합적·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4조에 따라 장성 군관리 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간적 범위
 - 위치 : 전라남도 장성군 행정구역 전역
 - 면적 : 518.581km²
- 주요내용
 - 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
 - 상위계획 및 장성군 정책계획 수용
 -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
 - 여건변화에 따른 정비

- 군계획시설 계획
 - 기 결정된 시설의 재검토
 - 주민 불편사항 해소

4. 관련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
- 「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

5.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40년 장성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성군의 장기발전방향의 구체화,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변경 지역의 재정비 및 주민요구 수용,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, 합리적인 용도지역의 현실화, 주민 불편해소 등을 반영한 “2030 장성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”에 대하여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절차이행 사항으로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52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교통에너지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기준 정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소득 향상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, 발전사업자 책무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주민참여 수단 및 비율(안 제5조)
- 개발이익 공유기준, 계획 제출 및 지정 신청(안 제6조 ~ 안 제8조)
-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9조 ~ 안 제13조)
- 이익공유, 자료요구 및 지원(안 제14조 ~ 안 제16조)
-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(안 제17조 ~ 안 제18조)
- 발전사업 양수 등(안 제19조 ~ 안 제20조)

4. 관련법령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 및 제27조의2
-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 및 제7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성군 내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참여 확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, 군민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 및 발전사업자의 책무, 군민참여 수단 및 비율, 개발이익 공유기준 및 계획 제출,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신청,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, 초과이익 공유, 자료제출 요구,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및 지정취소, 양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성이 인정되며,
- 근거법령 및 제정의 필요성·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53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농업기술과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분석실 설치 및 기능(안 제3조)
- 분석실 운영 및 관리(안 제4조)
- 분석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분석결과 통지(안 제9조)

4. 관련법령

-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제9조제1항, 제2항(지방자치단체의 역할 - 안전성 검사 등)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0조(안전관리계획)
- 제60조제2항, 제3항(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잔류조사)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 추진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,
- 주요 내용으로는 분석실의 설치 및 기능, 운영·관리, 분석 의뢰, 분석수수료 징수 및 면제, 분석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, 시료·자료의 보관관리,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성이 인정되며,
- 근거법령 및 제정의 필요성·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754호
- 제출일자 : 2026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맑은물관리사업소장)
- 회부일자 : 2026. 4. 30.

2. 제안이유

- 첨단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처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한 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고자 「하수도법」 및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업명 :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
- 시설현황 및 관리대행의 범위

시설명	위치	시설용량	처리공법	관리대행의 범위
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	남면 삼태리 27-17번지 일원	5,000m ³ /일	FA-SBR	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

- 대행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 (3년)
- 소요예산 : 1,342,652천원/년
 - ※ 산출근거 : 2026년 원가산정 용역 결과 반영
- 선정방법 : 일반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-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결과 : 적합
 - 경제적, 재무적, 정책적, 기술적, 법규적 부문 검토

4. 관련법령

- 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- 「하수도법」 시행령 제15조의3(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장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법정 수질기준 강화 및 안전관리 요구에 상시 대응하기 위하여,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한 관리대행업체에 운영·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위탁사무의 성격(상시·전문성), 인력확보 및 기술대응의 한계, 3년 계약(2027~2029)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대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